

의안번호	제 804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순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순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발 의 자 : 임순목, 이광진, 김봉희,
박병진, 장선배, 최광옥,
임희무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- 나.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기능 수정(안 제3조)
- 다. 기타 조문 수정(안 제3조,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와 협의
- 라. 입법예고 : '18. 2. 27. ~ '18. 3. 4. (의회홈페이지)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”을 “재난안전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재난지역”을 “재난안전”으로, “과학적 분석”을 “정책개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,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도·점검)”을 “(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도·점검”을 “지도·감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난지역</u>에 대한 조사 연구와 <u>과학적 분석</u> 2. <u>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</u> 3. ~ 6. (생략) 7. 그 <u>밖의</u>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<u>인정되는</u> 사항 <p>제7조(지도·점검)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, 수시로 <u>지도·점검</u>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재난안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센터의 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난안전</u>-----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정책개발</u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 2. ~ 5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 6. -- <u>밖</u>에 -----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 <p>제7조(<u>지도·감독</u>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지도·감독</u>-----</p> <p>-----</p>

관 계 법 령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, 2017.1.17.>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[제6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

<2017.1.17.>]